

의안번호	2200853
의 퇴 인	이용선의원
회 답 일	2024.6.27.
추 계 번호	24B1192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5항 제6호의2 신설 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	제3항 ¹⁾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률 및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
III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고, 동법 제28조²⁾ 등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
- 그런데, 개정안 부칙 제2조³⁾는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

1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등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2) 제28조(비용의 부담)

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안 부칙 제2조(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

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, 향후 새롭게 지정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할 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산업단지별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된 바 없어, 단지별 설비 설치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부재함

- 참고로, 2024년 1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는 51개소가 지정·운영중이며,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용자사업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음

[표 1] 산업단지 태양광 연도별 지원현황

연도	건수	금액(백만원)	용량(MW)
2020	175	64,367	62.4
2021	133	44,408	56.7
2022	167	40,028	36.8
2023	184	38,565	35.8

주: 산업단지에 대한 태양광 지원은 2020년부터 실시, 자료추출 2024.5월 말 기준
 자료: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

-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국가산업단지 현황

[참고표 1]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

(단위: 개, 천㎡)

단지명	지정면적	개소수	관리면적
국가산업단지	790,294	51	484,276
일반산업단지	574,436	732	564,905
도시첨단산업단지	11,871	46	11,847
농공산업단지	78,389	483	77,893
합계	1,454,990	1,312	1,138,921

자료: 한국산업단지공단, “산업단지 현황조사 24년 1분기”

[참고자료 2]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공장 지붕형 태양광 등 잠재량이 큰 산단 내 및 공장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장기·저리로 융자지원

□ 지원대상

- 산업단지 내 부지 및 공장,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
 -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(조합)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
 -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

□ 지원조건

자금 용도		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이자율	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
시설자금	태양광분야	300억원 이내	5년거치 10년 분할상환	분기별 변동금리*	중소기업(개인 및 협동조합) : 90% 이내 중견기업 : 70% 이내

*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 제18조 준용, '23년 2/4분기 현재 2.25%

□ 법적근거

- 전기사업법 제49조(기금의 사용)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-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절(금융지원사업)
-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절(금융지원사업)